

부산지방법원 2024. 7. 3 선고 2024가단1718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6. 19.

판 결 선 고 2024. 7. 3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, 제1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 오세영

별지